

## 실업급여 반환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공고

고용보험법 제2조 및 제40조에 의한 수급자격 불인정에 따른 실업급여 반환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를 등기 발송하였으나, 주소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.

2023. 12. 05.

###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서부지청장



1. 건 명: 실업급여 반환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공시송달
2. 근 거: 고용보험법 제2조, 제40조, 제62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
3.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

성 명	생년월일	주소	서류의 명칭	서류의 주요 내용	송달 불능 사유
김○택	610205	대구시 달성군 (이하 생략)	실업급여 반환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	수급자격 불인정(피보험자격 취소)에 따른 실업급여 부당이득 반환처분	폐문부재

4. 공고 기간: 2023. 12. 05. ~ 2023. 12. 27.(15일간)
5. 기타사항은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서부지청 대구달성고용센터 최봉수(Tel. 053-605-9531)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